

◇주요내용

- 가. 광해방지사업자의 정의인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서 ‘직접’을 삭제함(제2조제6호).
- 나.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의 이용 개발에 대한 인·허가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청취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11조의2제2항 신설).
- 다. 광해방지사업자의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의무위반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제3호).
- 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 결격사유 중 제1호의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제14조제1호).
- 마.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이전에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제15조제1항).
- 바. 광해방지사업의 추진실적 보고의무를 폐지함(제16조, 현행 제49조제1항 삭제).
- 사.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는 석탄광산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에 대해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을 면제함(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 아. 광해방지부담금의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요율을 정부의 통일된 가산금 부과기준에 맞도록 정비함(제26조제2항·제3항).
- 자.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권한을 신설함(제26조제5항 신설).
- 차.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과 가산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2 신설).
- 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토지 소유자 등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함(제39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윤상직

●**법률 제1308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상당한”을 “합리적인”으로 한다.

제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본증명서 발급 시 정보 보유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원본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등록을 통하여 영업비밀 보유 사실에 대한 입증근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나, 원본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원본등록된 정보의 보유사실에 대한 추정규정이 없어 입증근란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고,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입증근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 무 총 리 정 흥 원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윤 상 직

●법률 제13082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부품·소재”를 각각 “소재·부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부품·소재”라”를 ““소재·부품”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부품·소재를”을 “소재·부품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품·소재전문기업”을 “소재·부품전문기업”으로,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하고, 같은 호 가 목 중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을 “소